
- 2019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19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2건	주의 9 시정 13		4,115,250		
1	○○○○	2019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317,000		
2	○○○○	2017~ 2018	시설공사 계약 건설업 등록 면허 적용 부적정	주의				
3	○○○○	2018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203,250		
4	○○○○	2017~ 2018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54,000		
5	○○○○	2017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10,000		
6	○○○○	2017~ 2018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40,000		
7	○○○○	2018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1,858,000		
8	○○○○	2017~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075,000		
9	○○○○	2017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주의				
10	◇◇◇◇	2019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250,000		
11	◇◇◇◇	2017~ 2018	지방세 고지서(독촉장) 송달 부적정	주의				
12	◇◇◇◇	2017~ 2019	어르신 목욕권 관리 업무 소홀	주의				
13	◇◇◇◇	2017~ 2019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주의				
14	◇◇◇◇	2018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30,000		
15	◇◇◇◇	2018~ 2019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16	◇◇◇	2018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60,000		
17	◇◇◇	2018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27,000		
18	◇◇◇	2017~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45,000		
19	◆◆◆	2017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	주의				
20	◆◆◆	2017~ 2018	민원사무처리 지연	주의				
21	◆◆◆	2018~ 2019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46,000		
22	◆◆◆	2017~ 2019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317,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2건				△ 317		
1*(*) ** 정비공사 (2지구)	'19.04.04.	'19.04.08. ~'19.06.06.	**,***	△ 103	****(주) ***	
(*뒤) *** 및 **정비공사	'19.04.11.	'19.04.15. ~'19.06.13.	**,***	△ 214	(합)****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2019.04.01. ▷▷▷▷▷▷ ♠과 계약 체결한 『2019년 *****(***) ** 정비공사 측량용역』 성과 결과에 의거 자체 설계한 “*****(***) ** 정비공사(2지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시 뒷채움잡석 설치에 인력 및 굴삭기 조합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짐장비(물탱크 및 진동로울러)를 추가하여 과다적용 되었으며, “*****(***) ** 정비공사”에 대하여 U형배수로 공중의 철근가공및조립 설계시 철근의 절단 및 절곡이 필요한 U바 철근에는 철근가공 품을 적용하며, 절단과 절곡이 필요 없는 횡철근의 경우에는 철근조립 품만 적용하여야 하나, 전체 철근량에 대하여 철근가공및조립 품을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총 317천원/2건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317,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시설공사 계약 건설업 등록 면허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 예정금액	도급업체	계약면허	적정면허
8건						
**** ** 및 ** 진입로 확포장 공사	'17.09.20	'17.9.21 ~'17.11.4.	**,***	(주)****	시설물 유지	철근 콘크리트
(**) * 정비공사	'17.11.01	'17.11.2 ~'17.12.16.	**,***	(주)**	시설물 유지	철근 콘크리트
****(****뒤) 법면 정비 공사	'18.05.16	'18.5.16 ~'18.6.29.	**,***	****(주)	없음	석공사업
** ** 및 ** 정비 공사	'18.06.20	'18.6.25 ~'18.7.24.	**,***	****	수도급수 공사대행	철근 콘크리트
** ** 정비공사	'18.10.18	'18.10.22 ~'18.12.17	**,***	****(주)	하수도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 ** 포장 공사	'18.10.31	'18.11.5 ~'18.12.19.	**,***	(주)****	철근 콘크리트	석공사업
** **** 확장공사	'18.10.31	'18.11.5 ~'18.12.19.	**,***	****(주)	없음	철근 콘크리트
(**) ** 정비 공사	'18.11.20	'18.11.20 ~'18.12.19.	**,	(주)****	철근 콘크리트	석공사업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 공사등)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공사에정 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 ♡♡♡ ♥♥ ♣♣♣ 확포장 공사’의 7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르게 8건의 전문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3,250원

【제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1	1	1			203,250	
주민세 (재산분)	2018	주식회사 ****	○○○○ *** **외*	1	***m ²	250	203,250	

※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별도 산출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

제공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1건 203,25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누락한 주민세(재산분) 203,250원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54,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비 고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계	4건						54,000원 과다부과
1	*** (**,**,**)	'17.10.18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상)	50,000	40,000	20,000	20,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 (**,**,**)	'17.11.1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1개월 이내)	2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3	*** (**,**,**)	'18.05.2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24,000	6,000	1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4	*** (**,**,**)	'18.12.0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내)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을 오적용)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7.12.1.>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거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감경률이 75%로 증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여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미성년자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없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만 적용하거나, 감경률이 더 큰 규정이 있음에도 적은 감경률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과다부과 하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 1)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미성년자**
- 2) 「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54,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2건					20,000	
소속직원 부친상 기관대표 조문	***	2017.12.20	수원	40,000	30,000	10,000	공용 차량 이용
	***	2017.12.20	수원	40,000	30,000	10,000	

※ 퇴직자(***) 제외한 1명 환수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소속직원 부친상 기관대표 조문' 1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10,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2건		0	40,000
2017.09.12	****(****) **** 구입설치	****	**,***,***	20,000
2018.08.16	***** **** 구입(2차)	****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건 24,894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4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858,000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비 고
계		5건		0		1,858	
1	2018.04.20	○○○○○○○ 담장 도색공사	*****	**,***	고용산재 환경관리비	571	증빙없음
2	2018.06.18	** ** 포장공사	*****(주)	**,***	건강연금	322	증빙없음
3	2018.07.17	*** **** 및 *** 정비공사	(주)****	**,***	폐기물 처리비	115	증빙없음
4	2018.07.18	**** **정비 및 **확장공사	****	**,***	폐기물 처리비	513	정산 부적정 (처리톤수 부족)
5	2018.08.17	***(****주택뒤)법 면 정비공사	(주)**	**,***	건강연금	337	증빙없음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건 77,134천원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금액과 다르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1,858,000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07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 도	미소화 건수	미소화 금액	비고
2017 ~ 2019년	27건	1,075천원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7건 149,338천원을 집행하면서 재료비 비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채권을 징구하지 않는 등 지역개발채권 1,075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07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지급일	집행내용	품목	수량	단가	지출금액(원)	지출과목
2017.12.05.	동절기 도로 및 각종 사업장 관리자 *** 구입	***	5	***,***	*,***,***	시설 부대비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로 대분류하고, 시설부대비(401-03)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공사 사업장의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한 자에 한하여 업무상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이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동절기 도로 및 각종 사업장 관리자 *** 구입' 1건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과 무관하게 겨울철 제설작업 용도로 **부서 직원 및 관리자에게 ***를 구입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 편성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50,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1건				△ 250		
**** ** 정비공사	'19.03.27.	'19.03.29. ~'19.05.12.	**,****	△ 250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발부서)에서는 2019.03.20.일 ♣♣♣♣♣♣♣♣ ***와 계약 체결한 『2019년 ◇◇◇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용역(1차)』 성과 결과에 의거 자체 설계한 “○○○○ ◇◇◇ 정비공사”에 대하여 토공수량 산출시 굴착 구간을 절토 및 터파기 공종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하나, 일괄 구조물터파기 공종(일반적으로 토공물량 산출시 원지반선을 기준으로 절토(절취)는 측방으로의 굴착시 적용되며, 터파기는 수직하향 20cm이상 굴착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과다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총 25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250,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방세 고지서(독촉장) 송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건수	계	본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22	237,350	201,350	36,000	
주민세	2017년	3	33,990	30,900	3,090	
	2018년	1	11,330	10,300	1,030	
재산세	2017년	11	129,780	108,220	21,560	
	2018년	7	62,250	51,930	10,320	

2. 내 용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소에 송달하며,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년 ~ 2018년 정기분 주민세와 재산세 고지서 (독촉장) 반송분 22건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서류의 송달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어르신 목욕권 관리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어르신 목욕권 배부 현황

계(매)	2017년	2018년	2019년(상반기)
2,380	700	1,080	600

2. 내 용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지급받은 목욕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불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여 각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서 시행한 문서 [□□□□□-49500(2018.9.5.) 「어르신 목욕권 배부관련 지급대상자 신분확인 철저 안내」]에 따르면 목욕권 배부 시

반드시 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³⁾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한 배부 시에는 대리인에 대한 신분확인 및 수령확인(날인 및 서명)을 필히 이행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따라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수행 시 목욕권을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부득이하게 이장을 통한 배부 시에는 별도의 수령명부를 작성하여 실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에서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어르신 목욕권을 배부함에 있어 목욕권을 마을 이장에게 지급한 후 대상자 전달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목욕비 지원대상자가 목욕권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목욕권 배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어르신 목욕권 배부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불대장을 철저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 목욕권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 목욕비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제2조에 지원대상을 8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욕권을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대리인(자녀, 친지 등)에게 목욕권을 교부하고 사용하는 등 민원 발생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14건	235,300				
1	2017.09.20~27	1,900	2017.09.29	◇◇◇사무소	2일	
2	2017.10.10~16	18,200	2017.10.23	"	4일	
3	2017.10.17~20	2,000	2017.10.30	"	4일	
4	2017.10.23~25	4,800	2017.11.03	"	4일	
5	2017.10.31~11.02	3,600	2017.11.09	"	2일	
6	2017.11.08~20	5,800	2017.11.28	"	9일	
7	2017.11.23~28	2,200	2017.12.07	"	5일	
8	2018.02.19~23	18,800	2018.03.05	"	4일	
9	2018.04.16~19	6,000	2018.04.27	"	4일	
10	2018.04.23~27	15,800	2018.05.03	"	2일	
11	2018.05.28~06.01	12,800	2018.06.07	"	2일	
12	2018.07.16~20	12,200	2018.07.26	"	3일	
13	2018.08.20~24	14,000	2018.08.29	"	2일	
14	2019.01.14~15	9,000	2019.01.24	"	3일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증지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외에 있어 수입금을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2016. 9월부터 2019. 1월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14건을 금고에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기한 내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3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1건					30,000	
직원 모친 사망에 따른 문상 여비	***	2018.06.29	안산	40,000	30,000	10,000	공용 차량 이용
	***	2018.06.29	안산	40,000	30,000	10,000	
	***	2018.06.29	안산	40,000	30,000	10,0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모친 사망에 따른 문상' 1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30,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

지출일자	사업명	교부액(원)	수탁자	예산과목
2018.12.27.	2019년 ** *** 행사운영 준비	2,000,000	◇◇◇ ●●●	행사 운영비

※ 정산내역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수탁 계약서」 제5조에 “을”(◇◇◇●●●)은 계약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은 “2019년 ** *** 행사” 종료 후 수탁자에게서 제출된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2019년 ** *** 행사” 위·수탁 사업에 대해 종료 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서류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없이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였으며, 기타운영잡비 ***,***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사업완료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3건		0	60,000
2018.04.30	**** * 德크공사	*****	** , *** , ***	20,000
2018.05.10	*** * 외 6개소 응급복구공사	***** (****)	** , *** , ***	20,000
2018.10.18	당직실 *** 설치 및 ** 내부공사	****	** , *** ,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

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3건 32,451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6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7,000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비고
2018.05.23	**** ** 설치공사	****(주)	**,***	폐기물 처리비	27	증빙서류 없음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설치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폐기물처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음에도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폐기물처리비 27,000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4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5건		11,680			미소화 145 초과소화 60
2017.07.28	****(**)경고판 제작설치	****	1,588	35	20	-15
2017.10.11	관용차량 ***** 등 설치	****	1,738	-	25	25
2017.11.30	관용차량 *** 구입	(주)*****	3,268	45	-	-45
2018.05.14	관용차량(**저****) 보험가입	****	1,087	-	25	25
2019.01.18	2019년 ◇◇◇ *** 및 ** 임차	*****	3,999	-	95	9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

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건 11,680천원을 집행하면서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임에도 채권을 징구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145천원을 미소화하고, 정당액보다 60천원 초과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4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업 추진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최초계약금액 (천원)	변경계약금액 (천원)	시공회사
◆◆◆일원 ** 유지보수공사	'17.10.23.	'17.10.26. ~'17.11.17.	*,***	**,***	(주)** ***

2. 내 용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2조 제4호 내지 제9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예규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2017년 추진한 “◆◆◆일원 ▣▣▣ 유지보수공사”의 공사설계서에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물량 및 단가산출 내역서도 없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하였으며, 본 공사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 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 변경된 건으로 설계변경 시 적용된 신규 비목(구조물철거)은 단가의 산출근거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단가 및 낙찰률 적용근거 없이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변경계약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고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민원사무처리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민원명	민원인	담당자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비고
계	4건						
장애인등록	***	***	'17.03.28	'17.05.11	'17.05.15	4일	
장애인등록	***	***	'17.07.04	'17.08.14	'17.08.17	3일	
옥외광고물등의표시 신고	***	***	'18.07.27	'18.08.01	'18.08.15	14일	
주민등록표등본교부	***	***	'18.12.21	'18.12.21	'18.12.24	3일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

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등 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 처리기한 내 신속히 처리하였음에도 시스템 입력지연으로 처리기한을 넘겨 완결처리하거나, 담당자의 민원확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기한을 넘겨 민원을 해결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사무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46,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비 고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계	5건						46,000원 과다부과
1	*** (**,**,**)	'18.04.0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미만)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을 오적용)
2	*** (**,**,**)	'18.07.1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미만)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을 오적용)
3	*** (**,**,**)	'18.10.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24,000	6,000	1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4	*** (**,**,**)	'19.01.2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1개월 이내)	20,000	8,000	4,000	4,000원 과다부과 (감경을 오적용)
5	*** (**,**,**)	'19.03.1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미만)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을 오적용)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7.12.1.>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 감경대상자일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거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감경률이 75%로 증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여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5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50% 감경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과다부과 하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4)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46,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연 도	건 수	지출금액(원)	비 고
2017 ~ 2019년도	2건	3,360,000	현금 지급
	7건	3,720,000	대표자 일괄지급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령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⁶⁾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매분기 □□□□□□□□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수당 7만원 중 4만원은 개인별로 정당채권자에게 계좌이체하고 운영비로 사용할 3만원은 정당채권자가 아닌 대표자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금취급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계좌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회의참석수당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